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요령

제정 : 2017. 3.31.

제1차 개정 : 2018. 8. 2.

제2차 개정 : 2021. 9. 3.

제3차 개정 : 2022.10.19.

제4차 개정 : 2023.12.26.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다른 내규 등과의 관계 등)** ①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과 다른 내규 또는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내규 또는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내규 또는 지침을 적용한다.

②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부패행위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란 임직원 또는 외부인이 제4조의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 제5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신고자"란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을 신고한 임직원 및 외부인을 말한다.
- ③ "협조자"란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 또는 감사에 조력한 임직원 및 외부인을 말한다.

**제4조(신고대상)** 이 요령이 적용되는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 가.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관련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여 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또는 유인하는 행위

##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 상담·접수)** ① 감사실은 부패행위 신고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의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서면 또는 같은 신고서 서식의 전자문서로써 이를 신고하게 하여야 하며, 접수시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의 부패행위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의 접수증, 별표 1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안내문 및 별표 2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6조(신고의 조사)** ① 감사실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

첩·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근무처, 연락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 확보 여부

6. 신고자가 감사실의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감사실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실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신고자에게 신고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감사실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직무관련 범죄 고발 요령」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처리)** ① 감사실은 제6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경우, 부패행위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한 후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감사실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산업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감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⑤ 감사실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을 제외한다.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감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표 1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표 2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신고의 취하)** ① 감사실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이를 접수한 후에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확인되거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감사실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그 밖에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감사실은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신고자가 감사실의 제7조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 또는 제9조에 따른 종결 처리결과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실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신고자 등 보호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업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등)** ① 임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이를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목적

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 부서, 기타 관련 부서의 임직원은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실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별지 제4호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신변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실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성실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와 타인의 성명(ID를 포함한다)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요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보복행위 금지)**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 ① 감사실장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해당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경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인사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당하였을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요청
2.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보직 변경 등 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3.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 또는 수사기관 고발 요청

**제16조(신변보호)** 감사실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의 감면)** ① 이 요령에 따른 신고와 관련한 책임의 감면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이 요령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8조(협조자의 보호)** 이 요령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

**제19조(포상 및 보상)** ① 감사실은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현저하게 공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표 3의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는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감사실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 사실, 신고내용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이 자기 직무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감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5호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감사실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2022.10.19.삭제)

**제22조(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6. 감사담당 부서 및 윤리업무 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 7. 기타 제23조의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포상 및 보상심의)**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은 예산담당 부서장의 합의 후 윤리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감사실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윤리경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윤리경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포상금 및 보상금 환수)**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22조에 의한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감사실은 이를 검토하여 기 지급한 포상금 및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제정)

(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공사와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 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공사에 신고한 경우 : 공사에 신청) (신고자가 국민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사가 지급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국민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 앞 신고한 경우에 한해 국민권익 위원회에 신청)

※ 공사에서 지급하는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급하는 보상제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캔)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거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진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국민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 앞 신고한 경우에 한해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 신고 후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일부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별표 3]

##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포상 및 보상 대상가액	지급금액	지급한도
포상금	신고금액	20% 이내	
보상금	물 수, 추 징, 등 환 수 금 액 등	1천만원 이하	20% 이내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2백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이내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6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6% 이내
		1억원 초과	9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4% 이내
			5천만원

1.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발생하는 예상금액 기준
2. 계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다만, 계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익증대나 손실감소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윤리경영위원회에서 포상 및 보상금액 결정
3. 금품 등의 수수행위에 대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은 현금, 상품권, 선물 등 실체가 있어야 함
4.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포상 및 보상금액을 신고자수로 나누어 동일하게 지급
5. 윤리경영위원회는 포상 및 보상금액 결정 시 지급년도 가용예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감사실 접수담당 (인)

---



[별지 제5호 서식]

<b>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b>					
<b>① 추천기관</b>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b>② 포상금 지급대상자</b>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신고자		[ ] 외부 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b>③ 추천사유</b>					
<b>④ 조사결과</b>	신고 접수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b>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b>	청구여부	[ ] 있음 [ ] 없음	(기관명 : )		
	수령여부	[ ] 있음 [ ] 없음	(금액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b>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b> 귀하					